사료의 수집·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金炳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322 발의연월일: 2020. 12. 10.

발 의 자: 金炳旭・김영식・허은아

배준영 · 임이자 · 이주환

조경태・추경호・서일준

이채익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'한국사정보화심의회'는 2015년 행정안전부의 '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'에 따라 폐지 대상이 됐음. 하지만 법령 정비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. 이에 국사편찬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하는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폐지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제19조).

법률 제 호

사료의 수집·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료의 수집·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19조(한국사정보화의 촉진) ① | 제19조(한국사정보화의 촉진) ① |
| · ② (생 략) | · ② (현행과 같음) |
| ③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| <u><</u> 삭 제> |
| 통한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을 위 | |
| 하여 위원회에 한국사정보화심 | |
| 의회를 둔다. | |
|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| ④ <u>제1항 및 제2항</u> |
| 에 따른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에 | |
|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| |
| 한다. | |